
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8.

발 의 자 : 이원택 · 송옥주 · 김원이
윤준병 · 이성윤 · 진성준
이춘석 · 전종덕 · 박희승
허영 · 용혜인 · 이철규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(遞信)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, 농어촌지역 주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.

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 적자를 사유로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우체국을 2인 관서 체제로 운영하는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,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우편·예금·보험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.

특히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과 달리 우편업무와 함께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등 금융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, 각 업무를 전

담할 2인의 실무 전문인력과 감독 및 경영을 총괄하는 별정우체국장을 포함한 3인 관서 운영체계의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공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중성·투명성·효율성을 도모하고, 1인 결정 체계에 따른 잠재적 위험 해소 및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체국 기본인력의 3인 관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신설 등).
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금융사고 예방 등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직원의 채용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직원의 채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금융사고 예방 등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